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9. 12. 20
- 회부일자 : 1999. 12. 20

3. 제안이유

의료법,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및 비료관리법의 제·개정과 관련하여 권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관련 사무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보건사회 위생분야 관련수수료 신설
 - 종합병원 개설허가 ----- 1건 100,000원
 - 종합병원 개설 변경허가 ----- 1건 50,000원
 -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개설허가 --- 1건 80,000원
 -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개설 변경허가 -- 1건 40,000원
- 문화공보분야 관련 수수료 신설
 - 비디오물·게임물 판매·대여업등록(지정)신청 --- 1건 2,000원
 - 비디오물·게임물판매·대여업등록사항변경등록(신고)- 1건 1,000원
 - 시청제공업·게임제공업·노래연습장업등록(지정)신청 -- 1건 20,000원
 - 시청제공업·게임제공업·노래연습장업등록사항변경등록(신고)- 1건 5,000원
 - 종합게임장업등록(지정)신청 ----- 1건 20,000원

- 농수산물관련 수수료 신설
 - 비료생산업 등록 ----- 1건 30,000원
 - 비료수입업 신고 ----- 1건 30,000원

5. 검토내역 및 의견

-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 - 의료법개정에 따라서 종합병원 개설허가 등의 업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병원개설 허가 등 보건사회위생분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,
 -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비디오물·게임물 판매 대여업 등록신청 등 문화공보 관련 분야 수수료 신설과
 - 비료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각각 신설하려는 것으로써
- 법 제·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타 시·도와의 형평성 및 전국 평균 수수료금액 등 수수료 책정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※ 붙임 :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